

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(전혜숙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12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3. 13.

발의자 : 전혜숙 · 안규백 · 황주홍
이찬열 · 송옥주 · 조정식
박남춘 · 정재호 · 김영진
홍영표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인력개발원의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, 할 수 있는 사업에 정보·자료의 분석, 통계 작성 및 보건복지 분야 자격관리 업무를 추가하고, 교육훈련을 위한 장소 마련 등을 정부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.

주요내용

- 가. 정보·자료의 분석, 통계 작성 및 보건복지 분야 자격관리 업무를 사업으로 추가함(안 제6조).
- 나. 인력개발원은 교육훈련 등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장소를 충분히 마련하여야 하며, 정부는 이를 지원하여야 함(안 제13조의2 신설).

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5호 중 “수집 및”을 “수집·분석, 통계 작성 및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7. 보건복지 분야 자격관리에 관한 사업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교육시설의 확보) 인력개발원은 교육훈련 등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장소를 충분히 마련하여야 하며, 정부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사업) ① 인력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5. 국내외 보건복지 관련 정보·자료 수집 및 간행물 발간</p> <p>6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7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6조(사업) ① 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</p> <p>-----수집·분석, 통계 작성 및 -----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<u>보건복지 분야 자격관리에 관한 사업</u></p> <p>8. (현행 제7호와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조의2(교육시설의 확보) 인력 개발원은 교육훈련 등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장소를 충분히 마련하여야 하며, 정부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.</p>